

# 2021년 「장애인 활동지원사업」 추진계획
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

## 1 추진 개요

### □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, 제53조(자립생활지원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및 시행규칙 제2조
-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-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사업지침)

### □ 추진경위

- '06.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(국가사업 '07.5월)
- '07.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
- '11.10월 장애인활동보조 →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변경·확대
- '13. 1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(장애1급 → 장애1~2급)
- '14. 3월 최종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(180 → 200시간)
- '15. 2월 서울시 24시간 지원 시행(100명)
- '15. 6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(장애1~2급 → 장애1~3급)
- '18.10월 서울시 24시간 지원대상 확대(100 → 200명)
- '19. 7월 장애 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
- '20. 1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(50 → 120시간)
- '21. 3월 고령장애인(65세 이상) 활동지원 시범사업 시행

## 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만6세 ~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(소득기준 없음)
- 지원규모 : 20,000명 ※ 서울시 등록장애인 395천명의 5%
- 지원내용 : 가사,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
- 지원급여 : 구간에 따라 월 45~830시간(월 630천원~11,620천원)

지원내역 재원	지원시간(시간)	지원금액(천원)	지원기준
합 계	45~830	630~11,620	·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사용
국 비	45~480	630~6,720	· 종합점수 42점 이상
시비추가	50~350	700~4,900	· 기능제한 점수(X1) - 성인 300점, 아동 260점 이상 ·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
- 지원방법 :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(전자바우처 제공)
- 사업예산 : 399,22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지원금액	국비사업(국비 50% : 시비 35% : 구비 15%)			시비추가 (시비 100%)
	소 계	국고보조	가산급여	
399,220	348,204	346,751	1,453	51,016

## □ 지원기준

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를 15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금액지원

조사영역	조사항목	조사내용	최대점수	비고
점수산정	종합점수 = $(0.01225X_1 + 0.05583X_2 + CX_3) \times 30$			성인기준
기능제한 (X1)	일상생활동작	옷갈아입기, 목욕하기 등 13개	424	시비추가 대상선정 시 X1 점수 사용
	수단적 일상생활동작	전화사용, 물건사기 등 8개		
	인지행동특성	주의력, 위험인식 등 8개		
사회활동 (X2)	사회활동	직장생활, 학교생활 2개	24	
가구환경 (X3)	가구특성	1인독거가구, 취약가구 등 3개	4	
	주거특성	이동제한·지하층 등 2개		

## 2

# 추진계획

###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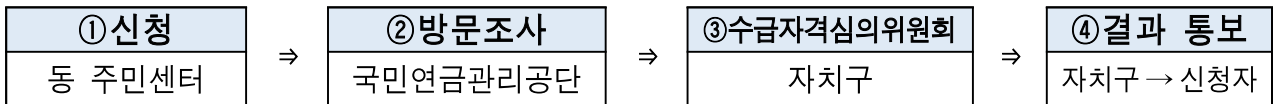
## 활동지원 세부내역

### □ 활동지원 서비스(보건복지부 고시-'21.1.1.)

지원 서비스	서비스 제공자	서비스 내용	단가(시간, 회)
활동보조	활동지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체활동 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</li> <li>가사활동 지원 : 청소, 주변정돈, 세탁, 취사</li> <li>사회활동 지원 : 등하교, 출퇴근, 외출시 동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간 : 14,020원</li> <li>야간·휴일: 21,030원 (22시~익일 06시)</li> </ul>
방문목욕	요양보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</li> </ul>	68,030원~75,450원
방문간호	간호사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간호, 진료보조, 영양상담, 구강위생 등</li> </ul>	36,530원~55,120원

※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가산급여 추가지급 가능

### □ 신청절차



※ 방문조사 :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후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조사

### □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: 국고보조사업의 기본급여로 활용

활동지원구간	종합점수	월 지원시간	월 한도액
1구간	465점 이상~	480	6,730,000원
2구간	435점 이상~465점 미만	450	6,309,000원
3구간	405점 이상~435점 미만	420	5,889,000원
4구간	375점 이상~405점 미만	390	5,468,000원
5구간	345점 이상~375점 미만	360	5,048,000원
6구간	315점 이상~345점 미만	330	4,627,000원
7구간	285점 이상~315점 미만	300	4,206,000원
8구간	255점 이상~285점 미만	270	3,786,000원
9구간	225점 이상~255점 미만	240	3,365,000원
10구간	195점 이상~225점 미만	210	2,945,000원
11구간	165점 이상~195점 미만	180	2,524,000원
12구간	135점 이상~165점 미만	150	2,103,000원
13구간	105점 이상~135점 미만	120	1,683,000원
14구간	75점 이상~105점 미만	90	1,262,000원
15구간	42점 이상~ 75점 미만	60	842,000원

## 2

## 국고보조 사업

### 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만 6세 ~ 65세 미만 장애인(소득기준 없음)
  - 【국고보조】 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’에 의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
  - 【가산급여】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
- 지원내용 :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
- 지원방법 :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
- 사업예산 : 346,751백만원 ※ 국비 50%, 시비 35%, 구비 15%
  - 국고보조 345,298백만원, 가산급여 1.453백만원

### □ 국고보조 급여

#### ① 활동지원급여(기본급여)

- 지원대상 :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인 자
- 적용기준 :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 산정
- 지원시간 : 구간에 따라 월 45시간(842천원)~480시간(6,730천원)
  -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 구간점수별 지원시간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

#### ② 특별지원급여(3종) : 출산, 자립준비, 보호자 일시부재 시 한시 지원

특별지원급여	월 지원기간	월 한도액
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	만 6개월	1,122,000원
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	만 6개월	281,000원
동거 가족의 결혼, 사망, 출산, 입원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	최대 6개월 (사유별 상이)	281,000원

### ③ 긴급활동지원

- 지원대상 :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만6세 ~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
- 지급사유 : 보호자 일시부재, 보장시설 퇴소자,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월 한도액 : 활동지원급여 13구간에 해당하는 급여(1,683천원)
- 지원기간 : 60일 ※ 급여개시가 늦어질 경우, 30일 연장 가능

### 가산급여

- 지원기준 : X<sub>1</sub>(기능제한) 점수 성인 446점, 아동 347점 이상인 자 중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
- 지원방법 : 활동지원사의 기본단가에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
- 가산급여 : 주간 1,500원/시간당, 야간 2,250원/시간당  
 ※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가산수당 50% 인상 : 1,000원 → 1,500원
- 사업예산 : 1,453백만원

### 본인부담금 : 소득수준별 차등부과

- 기초생활수급자 : 면제, 차상위 계층 : 2만원 정액
- 차상위 초과 계층(기준 중위 소득)

기준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	
구 간	금 액(원)
70% 이하	3,413,000
120% 이하	5,852,000
180% 이하	8,777,000
180% 초과	8,777,000 초과

본인부담금(1~15 구간 상이)	
부담율	금 액(원)
4%	33,600 ~ 170,700
6%	50,500 ~ 170,700
8%	67,300 ~ 170,700
10%	84,200 ~ 170,700

※ 15구간~1구간 순으로 본인부담금 상향 / 서울시 시비 추가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

### 3

## 시비추가 지원사업

### 〈 주요내용 〉

❖ 시비추가 대상 : X1 기능제한 점수에 따라 지원시간 상이

① 활동지원 수급자로 **와상 또는 사지마비 심한 장애인**에게 지원

※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(120~200시간), 와상·사지마비 비독거 가구(100시간)

② 최종증 **발달장애인** 독거가구인 경우 **와상·사지마비 지원기준 삭제 ('21년 신규)**

※ 최종증 발달장애인 독거가구(200시간)

③ **거주시설 퇴소장애인** 활동지원 : 120시간, 2년

❖ 시비추가 대상자 돌봄 서비스 강화

- **최종증 장애인**(X1 360점 이상) 24시간 지원 : 150시간 추가

※ 자치구 추천 : 와상·사지마비 독거 장애인 200명

- **동거가족 모두 최종증 장애인**인 경우 : 동거가족에게 최대 80시간씩 추가

- **최종증 장애인 간 결혼**으로 **급여량이 감소**된 경우(독거→비독거) : 최대 80시간씩 추가

- **가구 구성원이 심한장애인, 18세이하, 65세 이상**인 경우 : 최대 100시간 추가

### □ 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 : 만 6세 ~ 65세 미만 심한장애인, 거주시설 퇴소장애인

-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(120~350시간), 와상·사지마비 비독거 가구(100시간)

- 최종증 발달장애인 독거가구(200시간), 거주시설 퇴소장애인(120시간, 2년간)

○ 지원내용 :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

○ 지원방법 :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

○ 지원급여 : 기준별 월 100 ~ 350시간

- 지원단가 : 주간 14,020원, 야간 및 공·휴일 21,030원

- 국고보조사업과 단가 동일하며, 시비추가 급여는 가산수당 없음

○ 사업예산 : 51,016백만원(전액 시비)

## □ 서울시 추가급여

○ 지원기준 ※ 장애 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('19.7)

- '19.7월 이전 : 장애등급 인정점수(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)

· 유효기간이 만료(3년)되지 않은 시비추가 신규신청 또는 변경자 인정점수로 시간적용

- '19.7월 이후 :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X<sub>1</sub> 기능제한 점수(유효기간 동일)

○ 시비추가 기준표

### ① 성인용(만 19세 이상)

인정점수 기준('19.7월 이전 취득)		
연번	지원분류	월시간
1	(장애 1급)40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	350시간
2	(장애 1급)40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	200시간
3	(장애 1급)38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	120시간
연번	지원분류	월시간
1	(장애 1급)38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비독거 가구	100시간
2	시설퇴소자 (퇴소 후 2년간)	50시간



X <sub>1</sub> (기능제한)점수 기준(현재)		
연번	지원분류(독거)	월급여액(시간)
1	36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(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)	4,907천원 (350시간)
2	36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 <b>발달장애인 독거가구 [신규]</b>	2,804천원 (200시간)
3	30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	1,682천원 (120시간)
연번	지원분류	월급여액(시간)
1	30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비독거가구	1,402천원 (100시간)
2	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(퇴소 후 2년간)	1,683천원 (120시간)

### ② 아동용(만 19세 미만)

인정점수 기준('19.7월 이전 취득)		
연번	지원분류	월시간
1	(장애 1급)40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	350시간
2	(장애 1급)40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	200시간
3	(장애 1급)38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	120시간
연번	지원분류	월시간
1	(장애 1급)38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비독거 가구	100시간
2	시설퇴소자 (퇴소 후 2년간)	50시간



X <sub>1</sub> (기능제한)점수 기준(현재)		
연번	지원분류(독거)	월급여액(시간)
1	28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(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)	4,907천원 (350시간)
2	28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	2,804천원 (200시간)
3	26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독거가구	1,683천원 (120시간)
연번	지원분류	월급여액(시간)
1	260점 이상인 와상·사지마비 비독거가구	1,402천원 (100시간)
2	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(퇴소 후 2년간)	1,683천원 (120시간)

- **최중증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지원 확대** ➡ **‘와상·사지마비 기준’ 삭제** 신규
  - 지원대상 : X<sub>1</sub> 360점 이상 독거로 지적·자폐 장애인(16명 추정, 5억원 소요)
  - 지원내용 : 시비추가 지원기준인 월 최대 200시간 지원
- **지원 시 사전 검토사항**
  - 시비추가급여는 국비급여 유효기간 만료(3년) 시 동일하게 만료
  - 독거가구 급여(200시간, 120시간)의 경우는 반드시 국비 최중증 독거급여(400점 이상) 및 중증 독거급여(380점~399점) 수급 선행
  - 주민등록에 미등재되어 있어도,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독거가구로 미인정(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준용)

## □ **시비추가 대상자 돌봄서비스 강화**

- ① **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지원 : 200명('21년)** 계속
  - 지원대상 : 최중증 독거장애인 중 와상·사지마비 장애인 200명
  - 선정방법 : 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추천
  - 지원시간 : 시비 추가 최대 350시간 ※ 세부 운영내역 별도 계획 수립
- ② **동거가족 모두 최중증 시비추가 대상자인 취약가구 지원** 계속
  - 지원대상 : 동거가족이 모두 종합점수 X<sub>1</sub>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·사지마비이거나, 보호자 질병 등으로 실제 독거가구에 준하는 가구  
 ※ 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 중인 취약가구 최중증 와상·사지마비 장애인 포함
  - 지원내용 : 독거가구 지원 추가시간의 80% 지원(최대 80시간)
- ③ **결혼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취약가구 지원** 계속
  - 지원대상 :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가구  
 ※ 기 결혼한 부부 모두 최중증 와상·사지마비인 경우도 해당기준 적용
  - 지원내용 : 결혼으로 독거가구에서 제외되어 시비추가 급여량이 줄어든 경우, 줄어든 시간의 80%를 부부 동일하게 지원(최대 80시간)
- ④ **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,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독거 가구(준독거)로 인정하여 지원**(최대 100시간) 계속



## □ 업무 처리절차

### ○ 시비추가 신청 및 승인

① 대상자 신청 구 → 시(매월 21일 限)	⇒	② 대상자 승인 통보 시 → 구(매월 24일 限)	⇒	③ 행복e음 승인 구(매월 27일 限)	⇒	④ 서비스개시 익월 1일부터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### ○ 유의사항

- 시비추가 대상자는 반드시 市에서 승인 공문이 시행되면 승인 처리
  - ※ 매월 시비추가 승인은 24일 이전이므로, 2주전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안내
- 시설퇴소자의 경우 시비추가 신청은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하며, 2년간 시비추가 급여를 지원하므로 만료시점 관리 철저
- 기존 시비추가 수급자가 장애등급제 폐지('19.7월~)에 따른 갱신에 의하여 시비급여 시간이 줄어들 경우, 줄어든 급여시간 만큼 3년간 지원(단, 독거에서 비독거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)
  - ※ 국비급여의 경우에도 종합조사에 의해 급여시간이 줄어든 경우, 종전 급여시간 보장
-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,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 불가
- 시비추가는 본인부담금 없음(시비 100%)

### ○ 시비추가 급여 신청서식 : 붙임 5·6번 서식 활용

- 대상자 승인 신청 : 매월 21일까지 공문 시행

구분	가구 구분	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연락처	장애 유형	장애 등급	점수 및 급여 지원시간				시비 추가 시간	특이사항
							점수	국비	시비	구비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독거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독거											

- 진단서,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(와상·사지마비 등) 확인 가능하여야 함
- 반드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복명서 첨부(장애상태, 가구특성 등 명시)
- 취약가구지원의 경우 실태조사표 참고하여 해당 증빙서류 필수 제출(혼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시설퇴소자 지원의 경우 시설 퇴소확인증 첨부

## 4

#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(65세 보전급여)

### □ 사업개요 [’20.12.18 보건복지부 지침]

#### ○ 지원근거 :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

※ 수급자 중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#### ○ 사업대상 : 만65 ~ 73세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중 월 60시간 이상 감소자

※ ’21년 서울시 사업대상 97명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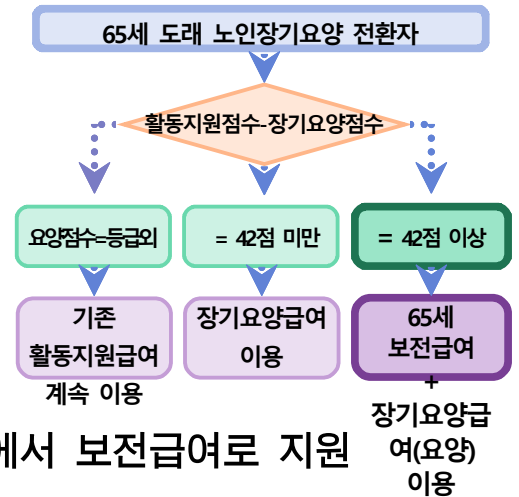
#### ○ 지원내용 : 감소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업에서 보전급여로 지원

#### ○ 사업개시 : ’21.3월

※ 행복e음,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개편 필요

- 월 100시간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’21.1 ~ 2월 긴급활동지원(월 120시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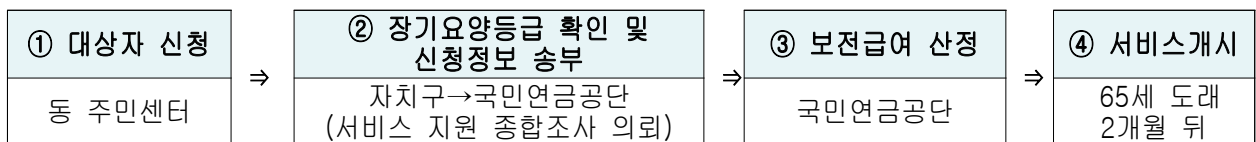
- ’20년 서울시 한시사업 지원대상(20명)은 ’21.1 ~ 2월까지 연장지원



### □ 신청방법

#### ○ 보전급여 신청절차

-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 기타 제반 절차를 실시 후 최종 활동지원 급여량 산정
- 기존 65세 도래자는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신규신청 조치



#### ○ 대상자 안내사항

- 일상생활(요양 수요) 지원은 노인장기요양을 이용하고, 활동지원은 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안내
- 65세 보전급여(시범사업) 지급 시 향후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대상자가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됨을 안내

## 5

## 코로나19 활동지원사업

## □ 24시간 예외지급 ['20.2.24, 12.24 보건복지부 지침]

- 지원대상 :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확진 또는 보건소 자가격리 통보자
- 지원방법 : 보호자에 의한 활동지원, 대체 활동지원사에 의한 돌봄 지원
- 지원기간 : 1일 최대 24시간, 자가격리 통보일 ※ 확진자는 퇴원시까지
  - 기본급여 우선사용(일할계산 차감)하고 예외지급으로 부족분 지원
  - ※ (예) 월 120시간 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: 1일 4시간(기본급여)+20시간(예외지급)

- ▶ 처리절차 : 사전보고 및 지급승인 → 예외지급 → 서울시에 결과보고(활동기록지 등 첨부)
- ▶ 단, 보호자에 의한 활동지원시 활동지원기관의 사전교육(2시간 이수) 및 계약 필요

## □ 비수급자(활동지원 미대상) 긴급활동지원 ['20.12.24 보건복지부 지침]

- 지원대상 :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
- 지원방법 : 보호자에 의한 활동지원, 대체 활동지원사에 의한 돌봄 지원
- 지원시간 : 1일 최대 12시간, 10일 지원
  - 입원기간 10일 경과 시, 10일 단위로 지자체에서 재지원 여부 판단

## □ 발달장애인 가족 한시급여 ['21.1.12 보건복지부 지침]

-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가구
- 지원방법 : 보호자에 의한 활동지원(가족급여 한시허용)
- 지원시간 : 수급자 기존 월 활동지원 급여량의 50%
- 지원조건
  - 사회적 거리두기 1.5~3단계 유지 시 지원
  - 가족급여는 한시지원 성격으로 활동지원사 매칭 지속 노력

- ▶ 처리절차 : 가족급여 신청(동 주민센터) → 자치구 확인 및 승인
- ▶ 보호자는 활동지원사 교육이수(실습 10시간 포함) 후 활동지원기관 계약

# 4

## 행정 사항

### □ 기관별 역할

추진 기관	업무 및 역할
서울시 (장애인자립지원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애인 활동지원 추진계획 수립·총괄</li> <li>◦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검토·승인, 사업 대상자 관리</li> <li>◦ 활동지원사업 예산 수립, 예탁금 상시 관리</li> <li>◦ 활동지원사교육기관(10개소) 관리</li> </ul>
자치구 (장애인 담당부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활동지원급여 승인·대상자 자격 관리</li> <li>- 동 주민센터 신청 →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 → 승인</li> <li>◦ 활동지원기관 관리 및 지도·감독</li> <li>◦ 활동지원사업 예산 수립, 사업비 예탁(사회보장정보원) 및 상시 관리</li> </ul>
활동지원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활동지원인력(활동지원사 등) 관리, 대상자 자격 관리</li> <li>◦ 활동지원인력 보수 지급, 기관 운영</li> </ul>
장애인거주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시설퇴소자 활동지원 신청 지원(퇴소 2개월 전 사전신청 가능)</li> </ul>

### □ 향후계획

- 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안내 : '21.2월초
- 사업예산 자치구 교부 : 매분기
- 사업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및 추경 : '21.6월 예정
  -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증액분 추경, 사업비 연간 부족액 추계 및 확보
-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신청자 검토 및 승인 : 매월 24일
-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수시 실시

※ 동 지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지원사업 세부사항 및 지원기준은 아래 지침 준용

- ▶ 「장애인활동지원법」,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
- ▶ 「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(2021.1.1.)
- ▶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('65세 보전급여') 지침(2020.12.18.)
- ▶ 코로나19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(2020.2.24.)
- ▶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 시 긴급활동지원 지침(2020.12.24.)
- ▶ 코로나19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허용 지침(2021.1.12./1.29)